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폐지이유

- 별정직공무원 범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던 규정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. 시행)에 따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.>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12.11.>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.>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삭제 <2012.12.11.>

4. 삭제 <2011.5.23.>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조 석 희
	담 당	김 현 주
	담 당 자	김 준 호 (480-6774)